

예산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110 호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
제 출 자 : 이한두의원외2인

□ 제안이유

- 우리군에 의좋은 형제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이성만 형제의 우애비가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었고 현재 대홍면사무소 앞에 보존되어 있으며
- 얼마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실존 인물로 이들의 우애를 널리 기리고자 예산군민의 상 효행부문에 의좋은 형제부문까지 확대하여 시상을 하고자 예산군민의상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군민의 상 수상대상을 형제간우애가 타의 귀감이 되는 자도 추가 확대함(안 제2조)
- 군민의상 부문중 효행부문을 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으로 함 (안 제3조제1항제1호)

□ 참고사항

- 예산군 발행 “효행과 우애” 책자

예산군 조례 제 호

예산군민의상조례증개정조례안

예산군민의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효행이”를 “효행과 형제간 우애가”로 하고,

제3조제1항제4호중 “효행부문”을 “효행 및 의좋은 형제부문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